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64호 2020. 5. 26.(화)

규 칙

- 남해군 규칙 제1171호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1
- 남해군 규칙 제1172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7
- 남해군 규칙 제1173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8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20-80호 남해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남해군청)]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10
- 남해군 고시 제2020-81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18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20-63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22
- 남해군 공고 제2020-653호 남해군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23
- 남해군 공고 제2020-656호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4
- 남해군 공고 제2020-675호 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31
- 남해군 공고 제2020-681호 남해군 소하천 잠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 남해군 공고 제2020-691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44
- 남해군 공고 제2020-707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1

회 략									
-----	--	--	--	--	--	--	--	--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71호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5월 2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견제출) ① 의견진술인은 의견제출기간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팀장
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 (제2조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나 관여한 차량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 등
	○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 있는 경우	○ 이사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 택배 및 화물 등 물품 승하차(생계형차량) ※ 단, 20분 이내 허용	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입증서류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노점상 단속, 현금수송 등)	관련기관 공문서
	○ 취재차량	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등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해군 규칙 제1172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5월 2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 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로, “미리” 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강의등을” 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규칙 제1173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5월 2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를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연간 정기선정 대상 납세자의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을
“정기선정의” 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 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80호

남해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남해군청)]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93-391호(1993.11.25.)로 최초 결정고시되고 남해군 고시 제2020-5호(2020.1.9.)로 결정(변경) 고시된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에 대해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재무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26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공공청사: 남해군청)사업
- 명 칭 : 공공청사(남해군청)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6,069m²
- 규 모

구 분	합 계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면 적(m ²)	16,069	16,0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담당부서: 재무과)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 및 재무과 (055-860-3188)에 비치】

남 해 군 공 보

(12) 제 664 호

2020년 5월 26일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1. 토지조서(총괄)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구 분	합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비 고
	필 지 수	면 적(m ²)	필 지 수	면 적(m ²)	필 지 수	면 적(m ²)	필 지 수	면 적(m ²)	
합계	70	16,069	5	744	7	8,093	58	7,232	
대	66	15,365	3	79	5	8,054	58	7,232	
도	4	704	2	665	2	39	-	-	

2. 지목별 토지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계	70	16,069	100.0	
대	66	15,365	95.6	
도	4	704	4.4	

3. 소유자별 토지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계	70	16,069	100.0	
국유지	5	744	4.6	-
공유지	7	8,093	50.4	남해군
사유지	58	7,232	45.0	-

4. 세부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의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24,685	16,069					
1	남해읍	북변리	137	6	대	1,621	1,281	남해군				
2	남해읍	북변리	138	8	대	334	196	박*석 이*엽 박*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22번길 37-16 405호(양지빌2차)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청로1가, 남해군지부)	근저당권
3	남해읍	북변리	138	10	대	67	44	기획재정부				
4	남해읍	북변리	139	4	대	138	74	한*준 최*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2			
5	남해읍	북변리	140	5	대	686	686	남해군				
6	남해읍	북변리	140	13	대	45	45	이*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34 목동 금호1차아파트 101-1203			
7	남해읍	서변리	17	2	도	340	24	남해군				
8	남해읍	서변리	18	3	대	13	7	남해군				
9	남해읍	서변리	18	5	대	156	12	이*자	18-5			
10	남해읍	서변리	18	7	대	30	29	기획재정부				
11	남해읍	서변리	18	9	대	6	6	기획재정부				
12	남해읍	서변리	20	3	도	295	15	남해군				
13	남해읍	서변리	20	4	대	170	87	구*업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68 1002호 (보성노블레스 아파트)			
14	남해읍	서변리	20	5	대	170	87	정*수	20-5			
15	남해읍	서변리	24	1	대	6,077	6,077	남해군				
16	남해읍	서변리	24	3	도	83	83	국토교통부				
17	남해읍	서변리	24	6	대	214	175	송*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7	남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7	근저당권
18	남해읍	서변리	24	14	대	8	8	김*범	29-3			

남 해 군 공 보

(14) 제 664 호

2020년 5월 26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	남해읍	서변리	24	21	대	5	5	박*근	25-2	남해신용 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5	가압 류
20	남해읍	서변리	25	2	대	244	244	김*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74-4 현대아파트 101-105			
21	남해읍	서변리	25	3	대	240	191	공*성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5-3			
22	남해읍	서변리	25	4	대	205	160	최*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9-1			
23	남해읍	서변리	25	5	대	411	410	이*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34 목동 금호1차아파트 101-1203			
24	남해읍	서변리	25	7	대	152	57	이*석	25-7			
25	남해읍	서변리	25	12	대	5	3	남해군				
26	남해읍	서변리	26	1	대	39	13	이*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0 101동1104호 (남해 평리 휴먼시아)	새남해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70-1	근저 당권
27	남해읍	서변리	26	8	대	47	14	정*심	아산리 396			
28	남해읍	서변리	28	1	대	172	141	송*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7	남해 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7	근저 당권
29	남해읍	서변리	28	2	대	145	113	이*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9	남해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9	근저 당권
30	남해읍	서변리	28	3	대	198	146	고*숙	부산 북구 화명동 2262 대우 리버파크 아파트 108-404			
31	남해읍	서변리	28	4	대	230	163	박*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25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25	근저 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의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2	남해읍	서변리	28	6	대	66	50	이*자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7-2	송*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17-5	가등기권자
								설*정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회전로 65-9			
33	남해읍	서변리	29	1	대	256	256	김*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40-3			
34	남해읍	서변리	29	2	대	407	407	김*근	29-2			
35	남해읍	서변리	29	3	대	145	145	김*범	북변동 300-28			
36	남해읍	서변리	29	4	대	139	139	김*범	북변동 300-28			
37	남해읍	서변리	29	5	대	69	69	김*자	29-5	남해 단위농업협동조합	남군 남해읍 북변동 100-9	근저당권
38	남해읍	서변리	30		대	340	340	조*산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빗담촌길 17-8	남해농업협동조합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00-9	근저당권
39	남해읍	서변리	31		대	217	217	고*훈	31			
40	남해읍	서변리	33	2	대	136	136	김*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4-18			
								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209동1008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41	남해읍	서변리	34	1	대	129	129	이*목	서울 종로구 충신동 1-308	진주 원예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689 (초전동, 초전지점)	근저당권
42	남해읍	서변리	34	2	대	265	265	임*숙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14-4			
								임*호	울산 중구 태화동 412-2 동부아파트 101-603			
43	남해읍	서변리	35		대	63	63	조*자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5			

남 해 군 공 보

(16) 제 664 호

2020년 5월 26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4	남해읍	서변리	36	1	대	201	201	정*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8길 8106동 315호 (거여동 거여1단지 아파트)			
45	남해읍	서변리	37	1	대	149	149	김*권	37			
46	남해읍	서변리	37	2	대	108	108	김*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번길 58 101동 106호 (외동 에스앤티 중공업 (주)사원아파트)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5	근저당권
47	남해읍	서변리	37	3	대	92	92	정*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34-19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남해군지부)	근저당권
48	남해읍	서변리	38		대	147	137	김*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59번길 18-5			
49	남해읍	서변리	39	1	대	159	159	박*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4-19	새남해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탐동로 40	근저당권
50	남해읍	서변리	39	2	대	10	10	정*엽	37			
51	남해읍	서변리	39	3	대	60	60	정*엽	37			
52	남해읍	서변리	39	5	대	102	102	김*권	37-1			
53	남해읍	서변리	39	7	대	106	106	김*권	37-1			
54	남해읍	서변리	39	9	대	46	46	송*심	이동면 난음리 1700			
55	남해읍	서변리	39		대	144	46	정*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12 주공1단지아파트 127-401			
56	남해읍	서변리	41	6	대	49	8	박*숙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로 59번길 17			
57	남해읍	서변리	44		대	98	45	임*주	18-5			
58	남해읍	서변리	46		대	103	29	김*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로 65	창선새마을금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81	근저당권
59	남해읍	서변리	47		대	301	295	최*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59번길 16-4	남해신용협동조합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40-6	근저당권
60	남해읍	서변리	49	1	대	208	208	류*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3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1	남해읍	서변리	49	2	대	255	255	김*훈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4-7	남해군 수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근저당권
62	남해읍	서변리	50	1	대	246	111	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24-11 에이동 202호 (임페리얼빌리지)			
63	남해읍	서변리	51		대	116	101	정*균	51			
64	남해읍	서변리	52		대	146	64	윤*수	진주시 평거동 717-2 동신맨션 아파트 에이동 105	신평새마을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234 (평거동)	근저당권
65	남해읍	서변리	53	1	대	74	1	김*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6	새남해새마을금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185	근저당권
66	남해읍	서변리	65	1	대	128	93	박*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64-13호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5	근저당권 지상권
67	남해읍	서변리	65	2	대	193	144	정*순	65-2			
68	남해읍	서변리	65	3	대	56	20	이*석	부산광역시 동구 흥곡로 41-4 (수정동)			
69	남해읍	서변리	65	4	대	160	85	윤*숙	65-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청정로 1가 75 (남해군지부)	근저당권
70	남해읍	서변리	490		도	6,089	582	기획재정부				

남해군 고시 제2020 - 81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70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 적 위 성 측 량 성 과 표

순번	구분	점명	세계측지계 산출성과						지역측지계(배열) 산출성과						관측(성좌) 일자	표지재질	소재지	측량상과 보편광소		
			경위도 좌표			ITRF2000_(ECEF)			원점	타원체 고(m)	경위도 좌표			평면좌표(m)						
			위도	경도	고도	X	Y	Z			위도	경도	고도	X(N)					Y(E)	표고(m)
1	신설점	10032	34-49-42.5703	127-53-32.0647	24640.310	-3219128.792	4136306.032	3622291.308	46.712	중부	34-49-31.3638	127-53-29.3896	148122.39	281647.11	19.821	철재	남해읍 평리 159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2	신설점	10033	34-49-45.4279	127-53-31.3678	24651.816	-3219062.271	4136277.658	3622363.982	47.392	중부	34-49-34.2217	127-53-28.6925	148210.30	281528.61	19.502	맨홀식	남해읍 평리 1615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	신설점	10034	34-49-46.5534	127-53-29.7071	24653.126	-3219038.069	4136288.568	3622393.887	49.902	중부	34-49-35.9473	127-53-27.0316	148244.60	281488.10	22.014	맨홀식	남해읍 평리 1615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	신설점	10035	34-49-47.8420	127-53-29.4010	24652.766	-3219020.181	4136279.250	3622428.951	54.226	중부	34-49-36.6360	127-53-26.7564	148294.25	281477.97	25.338	기타	남해읍 평리 1300A-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5	신설점	10036	34-49-48.7388	127-53-28.9311	24650.328	-3219000.084	4136272.868	3622450.564	52.306	중부	34-49-37.5339	127-53-26.2564	148311.81	281465.78	24.418	철재	남해읍 평리 130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	신설점	10037	34-49-50.0153	127-53-26.7609	24655.147	-3218946.043	4136283.214	3622486.529	56.783	중부	34-49-38.9094	127-53-24.0849	148350.02	281410.28	30.897	철재	남해읍 평리 1277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7	신설점	10038	34-49-50.5799	127-53-24.7698	24657.104	-3218906.381	4136322.104	3622506.213	68.241	중부	34-49-39.3740	127-53-22.1236	148367.88	281360.29	40.356	철재	남해읍 평리 산36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8	신설점	10039	34-49-50.5323	127-53-23.7512	246674.399	-3218888.468	4136343.743	3622509.075	75.363	중부	34-49-39.3264	127-53-21.0749	148365.87	281333.66	47.479	철재	남해읍 평리 127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9	신설점	10040	34-49-49.5007	127-53-23.1969	246643.837	-3218897.786	4136268.918	3622470.488	53.489	중부	34-49-38.2949	127-53-26.5211	148335.32	281472.33	25.601	철재	남해읍 평리 161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10	신설점	10041	34-49-50.0526	127-53-29.9959	246681.027	-3219008.482	4136239.605	3622485.174	54.758	중부	34-49-38.9469	127-53-27.3202	148352.51	281492.48	28.870	철재	남해읍 평리 107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11	신설점	10042	34-49-50.3879	127-53-30.7861	246671.538	-3219018.888	4136221.567	3622492.731	53.141	중부	34-49-39.1823	127-53-28.1104	148363.02	281512.46	25.252	맨홀식	남해읍 평리 1073A-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12	신설점	10043	34-49-52.1591	127-53-33.1612	246726.669	-3219046.835	4136157.926	3622536.796	50.097	중부	34-49-40.6538	127-53-30.4866	148418.14	281572.33	22.207	철재	남해읍 평리 1077-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13	신설점	10044	34-49-52.1780	127-53-34.0142	246727.433	-3219063.160	4136143.611	3622535.621	48.964	중부	34-49-40.9727	127-53-31.3387	148418.92	281594.00	21.063	철재	남해읍 평리 1257-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14	신설점	10045	34-49-50.6675	127-53-35.6118	246681.245	-3219110.775	4136138.696	3622496.563	47.468	중부	34-49-39.4621	127-53-32.9366	148372.73	281635.01	19.576	맨홀식	남해읍 평리 1082-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15	신설점	10046	34-49-51.6738	127-53-38.3277	246712.872	-3219154.375	4136082.355	3622522.039	47.504	중부	34-49-40.4686	127-53-35.6526	148404.36	281703.75	19.610	철재	남해읍 평리 1230A-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16	신설점	10047	34-49-45.7285	127-53-36.9741	246523.379	-3219192.344	4136187.141	3622372.642	49.197	중부	34-49-34.5236	127-53-34.2383	148220.87	281670.99	21.303	철재	남해읍 평리 1094A-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17	신설점	10048	34-49-47.5291	127-53-32.2771	246583.774	-3219078.064	4136234.631	3622417.441	47.931	중부	34-49-36.9232	127-53-29.6017	148275.26	281551.14	20.041	철재	남해읍 평리 161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18	신설점	10049	34-49-47.8109	127-53-30.5976	246592.079	-3219043.705	4136259.966	3622427.249	52.622	중부	34-49-36.0560	127-53-27.9221	148283.56	281508.38	24.733	철재	남해읍 평리 1055A-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19	신설점	10050	34-49-49.4611	127-53-33.4909	246643.866	-3219081.513	4136188.845	3622466.303	47.917	중부	34-49-38.2555	127-53-30.8155	148335.07	281581.45	20.027	철재	남해읍 평리 1607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20	신설점	10051	34-49-50.0913	127-53-32.2738	246692.734	-3219050.529	4136199.388	3622482.512	48.384	중부	34-49-38.8857	127-53-29.5983	148354.22	281550.35	20.494	철재	남해읍 평리 1072-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21	신설점	10052	34-49-21.80	127-52-44.4278	247780.139	-3218414.447	4137361.789	3621786.945	83.591	중부	34-49-10.5892	127-52-41.7500	147471.56	280342.21	55.729	철재	남해읍 평현리 519A-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22	신설점	10053	34-49-24.1479	127-52-46.0240	247853.297	-3218460.036	4137271.553	3621845.011	81.259	중부	34-49-12.9375	127-52-45.3464	147544.72	280432.96	53.385	맨홀식	남해읍 평현리 327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23	신설점	10054	34-49-26.8368	127-52-45.1917	247935.688	-3218378.811	4137284.359	3621916.249	90.439	중부	34-49-16.6296	127-52-42.5137	147626.92	280360.25	62.577	철재	남해읍 평현리 885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24	신설점	10055	34-49-27.1160	127-52-44.0082	247943.871	-3218365.015	4137302.754	3621928.705	96.335	중부	34-49-15.9057	127-52-41.3300	147635.29	280330.10	68.473	철재	남해읍 평현리 889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25	신설점	10056	34-49-28.6169	127-52-45.0655	248021.177	-3218344.954	4137246.059	3621987.160	87.910	중부	34-49-18.4070	127-52-42.3873	147712.80	280395.29	60.048	맨홀식	남해읍 평현리 860-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26	신설점	10057	34-49-23.8631	127-52-44.7171	247843.781	-3218399.827	4137331.020	3621841.252	87.297	중부	34-49-12.6625	127-52-42.0392	147535.21	280349.00	59.434	철재	남해읍 평현리 1049-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27	신설점	10058	34-49-24.7841	127-52-43.3087	247871.234	-3218364.355	4137343.711	3621866.862	92.283	중부	34-49-13.9536	127-52-40.6306	147562.86	280312.96	64.421	철재	남해읍 평현리 103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지 적 위 성 측 량 성 과 표

순번	구분	점명	세계측지계 산출성과				ITRF2000_(ECEF)				타원체고도(m)	원형	지역측지계(베셀) 산출성과				관측(셀지)일자	표지재질	소재지	측량성과도판장소	
			평면좌표(m)		경위도 좌표		X		Y				X(N)		Y(E)						고도(m)
			X(N)	Y(E)	경도	위도	X	Y	X(N)	Y(E)											
28	신설점	10059	34 49 24.8478	127 52 42.7882	247873.689	280374.326	-3218354.170	4137352.122	3627870.303	94.547	중부	34 49 13.6372	127 52 40.1111	147565.12	280299.74	66.686	남해읍 평현리 142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29	신설점	10060	34 49 27.0341	127 52 40.8578	247940.544	280324.653	-3218298.009	4137359.862	3627932.638	106.881	중부	34 49 15.9237	127 52 38.1794	147632.07	280250.06	78.982	남해읍 평현리 886-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0	신설점	10061	34 49 27.8135	127 52 39.2185	247964.300	280282.783	-3218261.054	4137380.204	3627897.284	115.481	중부	34 49 16.6031	127 52 36.5369	147655.72	280208.19	87.623	남해읍 평현리 900-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1	신설점	10062	34 49 23.3112	127 52 42.3124	247826.239	280362.625	-3218359.008	4137378.072	3627829.936	90.177	중부	34 49 12.1004	127 52 39.6343	147517.86	280286.04	62.316	남해읍 평현리 1057-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2	신설점	10063	34 49 21.8390	127 52 43.0697	247781.039	280382.266	-3218397.707	4137383.626	3627788.979	85.424	중부	34 49 10.6291	127 52 40.3918	147472.46	280307.68	57.563	남해읍 평현리 1008-5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3	신설점	10064	34 49 21.8151	127 52 41.6920	247779.994	280347.261	-3218361.192	4137406.560	3627789.347	87.130	중부	34 49 10.6042	127 52 39.0140	147471.42	280272.68	59.270	남해읍 평현리 1010-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4	신설점	10065	34 49 22.0569	127 52 40.4606	247787.715	280315.902	-3218334.840	4137423.650	3627796.556	88.038	중부	34 49 10.8459	127 52 37.7824	147478.59	280241.32	61.179	남해읍 평현리 142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5	신설점	10066	34 49 23.9275	127 52 40.1619	247844.752	280307.805	-3218311.234	4137405.668	3627846.817	94.190	중부	34 49 12.7167	127 52 37.4836	147536.17	280233.22	66.330	남해읍 평현리 923-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6	신설점	10067	34 49 24.0753	127 52 41.3952	247849.581	280339.109	-3218335.148	4137385.363	3627851.430	95.720	중부	34 49 12.8646	127 52 38.7170	147541.00	280284.52	67.860	남해읍 평현리 929-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7	신설점	10068	34 49 25.0001	127 52 39.0757	247877.555	280279.913	-3218282.267	4137413.386	3627873.948	102.939	중부	34 49 13.7894	127 52 36.3972	147588.99	280205.33	75.080	남해읍 평현리 1024-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8	신설점	10069	34 49 24.5910	127 52 38.5963	247864.408	280217.015	-3218239.908	4137461.549	3627871.946	106.799	중부	34 49 13.3801	127 52 33.9177	147555.52	280142.43	80.942	남해읍 평현리 929-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39	신설점	10070	34 49 22.9979	127 52 37.0666	247815.419	280229.395	-3218259.702	4137467.533	3627823.883	95.206	중부	34 49 11.7869	127 52 34.3881	147506.83	280154.81	67.349	남해읍 평현리 924-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0	신설점	10071	34 49 21.6714	127 52 36.0512	247774.312	280203.947	-3218255.277	4137503.873	3627792.148	98.402	중부	34 49 10.4602	127 52 33.3277	147465.73	280129.36	70.545	남해읍 평현리 977-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1	신설점	10072	34 49 21.8454	127 52 38.1129	247780.133	280256.295	-3218239.580	4137465.184	3627792.934	92.069	중부	34 49 10.6343	127 52 35.4346	147471.55	280181.71	64.211	남해읍 평현리 1013-6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2	신설점	10073	34 49 21.4126	127 52 39.9864	247767.208	280303.566	-3218331.757	4137440.059	3627780.000	86.697	중부	34 49 10.2015	127 52 37.2802	147488.03	280229.98	60.837	남해읍 평현리 1010-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3	신설점	10074	34 49 20.2555	127 52 40.3235	247731.629	280312.902	-3218350.988	4137450.088	3627750.345	87.921	중부	34 49 9.0443	127 52 37.6454	147423.05	280238.32	60.081	남해읍 평현리 1429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4	신설점	10075	34 49 18.0169	127 52 38.1493	247682.158	280258.252	-3218332.473	4137516.274	3627684.744	88.726	중부	34 49 8.8054	127 52 35.4712	147353.57	280183.67	61.867	남해읍 평현리 967-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5	신설점	10076	34 49 20.1972	127 52 38.9111	247728.148	280226.206	-3218287.397	4137509.575	3627752.532	95.684	중부	34 49 8.9559	127 52 34.2328	147419.56	280151.62	67.806	남해읍 평현리 980-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6	신설점	10077	34 49 15.6109	127 52 36.7495	247587.702	280223.326	-3218331.852	4137573.415	3627635.535	92.630	중부	34 49 4.3991	127 52 34.0714	147279.12	280148.75	64.772	남해읍 평현리 980-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7	신설점	10078	34 49 11.8046	127 52 37.6660	247470.569	280248.000	-3218336.657	4137618.213	3627644.925	102.584	중부	34 49 5.5924	127 52 35.0022	147162.02	280173.43	74.726	남해읍 평현리 1131-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8	신설점	10079	34 49 09.5035	127 52 38.4663	247399.676	280269.966	-3218440.526	4137640.823	3627486.682	107.810	중부	34 48 58.2911	127 52 35.8188	147091.29	280194.80	79.950	남해읍 평현리 1284-5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49	신설점	10080	34 49 07.5411	127 52 38.7030	247339.445	280275.148	-3218467.426	4137686.850	3627441.804	110.891	중부	34 48 56.3285	127 52 35.0265	147030.86	280200.58	83.031	남해읍 평현리 1286-7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50	신설점	10081	34 49 06.0386	127 52 40.5664	247256.405	280322.893	-3218519.586	4137656.779	3627404.400	109.299	중부	34 48 54.8838	127 52 37.8892	146986.82	280248.33	81.438	남해읍 평현리 1286-7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51	신설점	10082	34 49 02.6111	127 52 41.6156	247188.165	280350.499	-3218576.106	4137686.010	3627313.674	104.929	중부	34 48 51.3980	127 52 36.3988	146879.58	280275.94	77.067	남해읍 평현리 1887-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52	신설점	10083	34 49 05.2794	127 52 42.8860	247270.677	280382.067	-3218572.777	4137629.143	3627381.195	104.952	중부	34 48 54.0697	127 52 40.2091	146982.10	280307.51	77.090	남해읍 평현리 1423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53	신설점	10084	34 49 05.8522	127 52 45.1627	247288.636	280439.773	-3218610.828	4137583.826	3627394.067	102.117	중부	34 48 54.6396	127 52 42.4860	146690.26	280365.21	74.254	남해읍 평현리 신214-3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54	신설점	10085	34 49 09.7643	127 52 49.0492	247410.264	280537.490	-3218642.209	4137463.301	3627486.156	93.551	중부	34 48 58.5523	127 52 46.3725	147101.69	280462.92	65.685	남해읍 평현리 1237-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지 적 위 성 측 량 성 과 표

순번	구분	점명	세계측지계 산물성과						지역측지계(매셀) 산물성과						관측(셀지) 일자	표지계열	소재지	측량성과 부관정보				
			경위도 좌표			ITRF2000_(ECEF)			원점			경위도 좌표							평면좌표 (m)			고도 (m)
			위도	경도	위도	X (N)	Y (E)	Z	X (m)	Y (m)	Z (m)	위도	경도	위도					X (N)	Y (E)	Z (m)	
55	신설점	10086	34 49 08.4231	127 52 46.8970	34 49 08.4231	-3218613.148	4137515.023	3621453.794	92.806	중부	34 48 57.2109	127 52 44.2202	147089.98	280408.59	64.941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237-4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56	신설점	10087	34 49 07.9275	127 52 42.5398	34 49 07.9275	-3218653.382	4137580.256	3621441.572	93.362	중부	34 48 56.7151	127 52 39.8827	147043.63	280297.99	65.500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214-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57	신설점	10088	34 49 09.2682	127 52 42.9483	34 49 09.2682	-3218623.225	4137562.866	3621473.378	89.663	중부	34 48 58.0559	127 52 40.2712	147085.04	280308.01	61.801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276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58	신설점	10089	34 49 10.5106	127 52 42.8853	34 49 10.5106	-3218506.175	4137543.551	3621502.130	84.970	중부	34 48 59.2985	127 52 40.2081	147123.31	280305.07	57.108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210-3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59	신설점	10090	34 49 10.3175	127 52 45.3059	34 49 10.3175	-3218556.391	4137507.918	3621496.765	84.129	중부	34 48 59.1054	127 52 42.6289	147117.90	280387.64	56.255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21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0	신설점	10091	34 49 13.6966	127 52 48.0829	34 49 13.6966	-3218570.947	4137411.689	3621576.992	74.921	중부	34 49 2.4649	127 52 45.4059	147222.65	280437.30	47.056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609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1	신설점	10092	34 49 15.040	127 52 43.6467	34 49 15.040	-3218470.169	4137465.750	3621614.063	80.321	중부	34 49 3.8284	127 52 40.9593	147283.06	280324.19	52.459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995-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2	신설점	10093	34 49 12.6405	127 52 42.9813	34 49 12.6405	-3218484.712	4137511.988	3621555.588	84.223	중부	34 49 1.4286	127 52 40.3039	147188.97	280307.93	56.361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43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3	신설점	10094	34 49 13.3354	127 52 41.0197	34 49 13.3354	-3218442.014	4137538.289	3621577.878	92.472	중부	34 49 2.1235	127 52 38.3421	147209.94	280257.89	64.611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435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4	신설점	10095	34 49 09.2385	127 52 39.9268	34 49 09.2385	-3218467.489	4137616.275	3621477.794	98.694	중부	34 48 58.0261	127 52 37.2494	147083.45	280231.23	70.834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283-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5	신설점	10096	34 49 14.8772	127 52 40.4018	34 49 14.8772	-3218410.015	4137522.726	3621613.542	86.623	중부	34 49 3.6654	127 52 37.7241	147257.32	280241.77	58.763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105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6	신설점	10097	34 49 16.3203	127 52 38.5425	34 49 16.3203	-3218357.775	4137532.522	3621650.781	87.903	중부	34 49 5.1086	127 52 35.8646	147301.38	280184.13	60.044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435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7	신설점	10098	34 49 13.4977	127 52 51.5285	34 49 13.4977	-3218641.164	4137359.340	3621570.777	72.847	중부	34 49 2.8863	127 52 48.8518	147217.30	280524.92	44.980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609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8	신설점	10099	34 49 11.4334	127 52 48.4355	34 49 11.4334	-3218606.310	4137442.554	3621524.086	82.537	중부	34 49 0.2216	127 52 45.7587	147152.99	280446.67	54.672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235-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69	신설점	10100	34 49 10.4270	127 52 39.6771	34 49 10.4270	-3218447.718	4137601.195	3621505.675	94.882	중부	34 48 59.2147	127 52 36.9586	147120.02	280224.56	67.022	2020.01.29	남해읍 평현리 1188-2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70	신설점	10101	34 49 48.4681	127 53 37.9753	34 49 48.4681	-3219182.512	4136133.086	3622441.569	48.590	중부	34 49 37.2626	127 53 35.3004	148305.49	281695.68	20.697	2020.01.29	남해읍 평리 1088-1	남해군정 민원봉사과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63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명)	남해군수 (상하수도과장)	주소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소하천명		벽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752번지		
	면적	3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5. 8. ~ 영구점용(공사기간: ~ 2020. 8. 31.)		
	목적 및 사유	하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0 - 653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남 해 군 수

1. 2020년 1분기 임대차계약(임대조건) 신고 현황

신고처리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2003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로21번길 115 306실	5,000,000	350,000
2020012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16 1동 1층실	45,000,000	50,000
2020012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16 1동 2층실	10,000,000	300,000
202002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로21번길 115 305실	5,000,000	320,000
2020030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507 (서호빌라) 105호	15,000,000	500,000
2020030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507 (서호빌라) 205호	0	700,000
202003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로21번길 115 306실	5,000,000	320,000
202003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로21번길 115 402실	30,000,000	0
202003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로21번길 115 202실	15,000,000	220,000
202003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로21번길 115 201실	5,000,000	320,000

남해군 공고 제2020 - 656호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2. 제정이유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위반 감경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징금 감경기준 추가(별표)

나.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 및 한글맞춤법 정비(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참조 청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교육청소년팀
- 연락처 : 전화055-860-8644, 팩스055-860-3750, e-mail : leesy226@korea.kr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제2조 관련)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정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정율		
		50% 감정	30% 감정	20% 감정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남 해 군 공 보

(28) 제 664 호

2020년 5월 26일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 인원이 3인 미만	·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	·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2조 관련)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별표] (제2조 관련)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 16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 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 22조에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 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 28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 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주류판매자 100만원, · 담배판매자 100만원	· 판매액이 1만원 미만	·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3. 법 제 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 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주류판매자 100만원, · 담배판매자 100만원	· 판매액이 1만원 미만	·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4. 법 제 28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 2조제4호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판매액이 1만원 미만	·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4. 법 제 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 2조제4호나목의 판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5. 법 제 29조제1항에 위반하여 법 제 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 1개월 미만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 법 제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 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 1개월 미만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6. 법 제 29조제1항에 위반하여 법 제 2조제5호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 1개월 미만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6. 법 제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 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 1개월 미만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현					개 정 안				
<p>[별표] (제2조 관련)</p> <p>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p>					<p>[별표] (제2조 관련)</p> <p>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p>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청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청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 300만원	·출입 인원이 3인 미만	·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	·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 300만원	·출입 인원이 3인 미만	·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	·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2호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3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8.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3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9. 법 제30조제8호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창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3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 를 목적으로 창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3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10. 법 제30조제9호에 위반하여 주로 다 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 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1,0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1,000만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남해군 공고 제2020 - 675호

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나. 명 칭 : 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 236㎡
- 나. 규 모 : TTP보강(25t) 514EA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2020. 6.
- 나. 준공예정일 : 2020. 12.

5.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하는 토지 세목조서 및 지장물건 조서 : 해당 없음

6.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055-860-3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681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하한금액 인상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법령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례를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하한금액 인상 (안 제2조제1항)

기 존	개 정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 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오탈자 수정·정비(제1조,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 등)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년 6월 8일(월)까지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94,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 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를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로,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을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시지가”를 “표준지공시지가”로, “동법 제10조제2항”을 “같은 법 제3조제8항”으로,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을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 중 “1월미만”을 “1월 미만”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1월미만”을 “1월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1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제곱미터미만의”를 “1제곱미터 미만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제곱미터미만”을 “1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를 “법 제22조제4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하천 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우수점용한”을 “범위에서 생활용수로 유수를 점용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항) 본문 중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점·사용하여”로, “10퍼센트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점·사용등허가”를 “점·사용등의 허가”로, “허가시”를 “허가 시”로, “연도 3월내에”를 “연도의 3월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를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경우에”로, “징수시기”를 “징수 시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에 따라”로, “허가량 만큼”을 “허가량만큼”으로, “허가가”를 “허가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의 제목 “(부과징수 위임)”을 “(부과·징수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징수 및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부과·징수 및 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규정한 점사용 허가를 관한 업무는”을 “따른 점·사용 허가에 관한 업무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허가

[별표 1]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공작물 설치(군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 <개정 2006.4.28></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의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업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다만, 하천 구역 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 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p> <p>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p> <p>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p>

<p>3. 하천부속물 의 점용</p>	<p>제1항에 준한다.</p>
<p>4. 유수의 점 용</p>	<p>가) 전기 사업 초당 1㎡ 이상 사용 시 연액 20만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승인 된 요금 또는 사용료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초당 0.05 ~ 0.5㎡까지 연액 1만원 ○ 초당 0.5㎡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p>
<p>5. 지하의 유 수 채취</p>	<p>제4항(유수의 점용)의 기준에 준한다.</p>
<p>6.배수(주수)</p>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3분의 1 다만, 월 1만㎡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 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4분의 1 다만, 월 1만㎡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7. 토석·모래· 자갈 등의 채취</p>	<p>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 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p>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토지의 점용)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점용료 등 조정산식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 이상 5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 이상 1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 이상 2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 이상 5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2.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천분의 1
3.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	점용료의 1천분의 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법 제22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허가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 「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 ----- -----.</p>
<p>제2조(점용료등의 산정 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 -----.</p>
<p>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u>감안하여</u> 결정할 수 있다.</p>	<p>② ----- ----- 표준지공시지가----- 같은 법 제3조제8항-----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 ----- ----- <u>고려하여</u> ----- -----.</p>
<p>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u>아니</u>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p>	<p>③ ----- ----- 1년 미만----- -----, ----- 1월 미만----- <u>않는</u>다. -----</p>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 4. (생 략)
5. 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우수점용한 경우
6. ~ 8. (생 략)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 1제곱미터 미만의 -----
----- 않는
다. ----- 1제곱미터
미만-----.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하천관리청-----

3. · 4. (현행과 같음)
5. ----- 범위에서 생활용수로 우수를 점용하는 --
6. ~ 8. (현행과 같음)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점·사용하여 -----

----- 100분의 10 이상 -----
----- 점용료등-----

따라 -----.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사용등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생략)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허가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수수료 기준은 별표 3에 따라 군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부과징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및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점사용 허가를 관한 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
-- 회계연도-----
점·사용등의 허가----- 허가
시 -----
----- 연도
의 3월까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경우에 ----- 징수 시기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
----- 않는다. -
---- 법 제18조에 따라 -----

----- 허가량만큼 -----
----- 허가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
부과·징수 및 법 제14조제1항제1호
----- 따른 점·사용 허가에 관
한 업무를 -----.

남해군 공고 제2020 - 691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 (안 제1조~ 제2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안 제3조~제4조)
- 다.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 (안 제5조~제6조)
- 라. 지원단의 설치 (안 제7조)
- 마.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와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 (종합사회복지관) 우52419
- 연락처 : 전화 055-860-3819, 팩스 055-860-3882, e-mail solar915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남해군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단장이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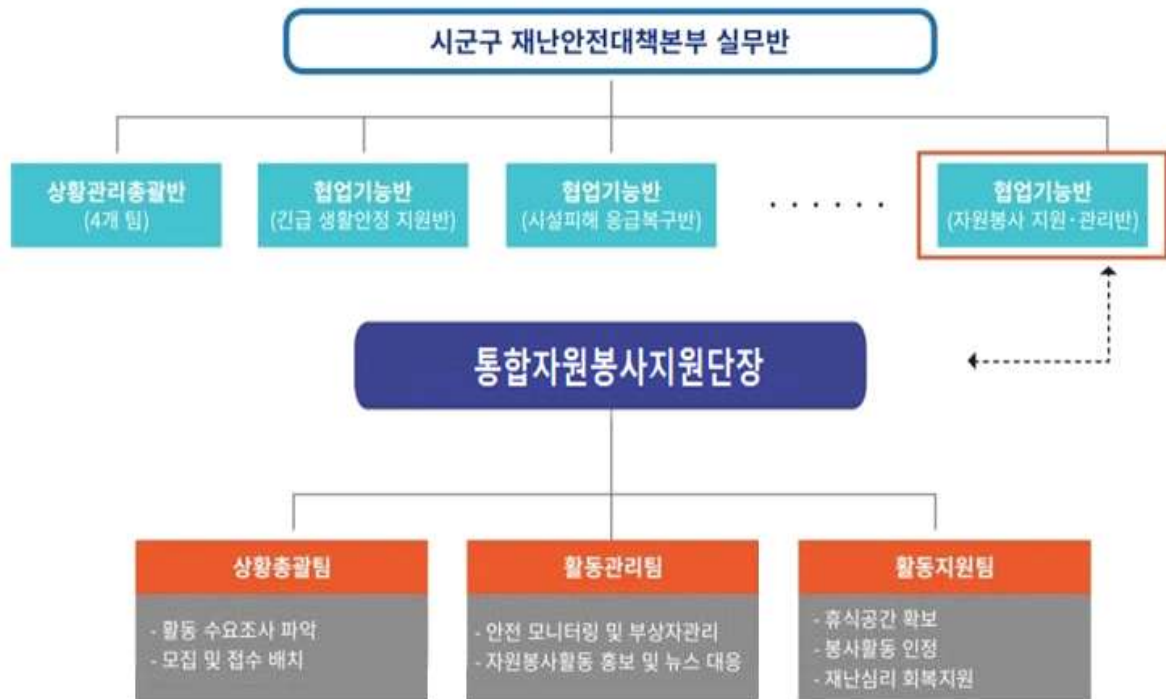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남해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별표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남해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사지원단 장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장 (공무원/민간인)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 자원봉사활동 상황관리 및 필요사항 발굴·지원
상황 총괄팀	남해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총괄지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재난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주민복지과 자원봉사 담당자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활동 관리팀	대한적십자사 남해지구협의회장	▶ 자원봉사 활동 홍보 및 모니터링 ▶ 자원봉사자 편의시설 지원 등
	남해군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 지원팀	남해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 재난현장 부족 자원 파악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남해군 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	▶ 재난심리 회복 지원 및 부상자 인계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비 고

-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707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가치실현과 일자리 실천을 목적으로 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감면조항 신설(안 제31조)

-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 기업 등인 경우

나. 법령폐지에 따른 관련 근거 규정 변경

○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폐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근거 규정으로 개정(안 제18조의 2)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개정(안 제37조 제9호)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남해군청) 재무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152, 팩스 860-3705, e-mail : joryu@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제3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의 시설 :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17조제6항·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의 시설 : 사용료의 100분의 50
- 2.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시설
 - 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 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대부료 등의 100분의 25

제37조제9호 중 “자” 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p>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p> <p>2. (생략)</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신설></p> <p>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p> <p>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p> <p>④ · ⑤ (생략)</p> <p>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p>제18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 -----</p> <p>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p> <p>2. (현행과 같음)</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의 시설 : 대부료의 100분의 50</p> <p>③ 영 17조제6항 · 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의 시설 : 사용료의 100분의 50</p> <p>2.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시설</p> <p>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p> <p>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대부료 등의 100분의 25</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 8. (생 략)

9. 공유재산 중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잔에 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0.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0. (현행과 같음)